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

(김경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70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 김경훈 의원(1명)
찬 성 자 : 경기문, 곽향기,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춘선, 박환희, 신복자, 유만희,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영실, 임춘대,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3명)

1. 제안이유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나.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수돗물 절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 부족 상황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맞게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절수설비에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수돗물 절약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자치구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내용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돗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참여를 위한 인식 개선
2.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3. 우수사례 발굴, 수돗물 절약 홍보 물품 지원
4. 가뭄으로 인한 재난상황 예방단계 및 재난상황 시 절수를 위한 옥내 밸브 조정에 따른 밸브 부속품 파손에 대한 복구 지원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포상)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3100600000012

미첨부사유서(2호)

요 청 인 : 김경훈 의원	담 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
접 수 일 : 2023.10.06.	
회 신 일 : 2023.10.12.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지원), 제7조(수돗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와 제8조(포상)를 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2호)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지원), 제7조(수돗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와 제8조(포상)를 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참고자료로 붙임

※ 절수설비 등의 설치지원 조례안은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발의되어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참고] 2023 에코마일리지제 관련 사업

사업명	예산액(천원)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1,107,241
에코마일리지 우수가정 인센티브	2,100,000

자료: 2023 서울시 예산서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붙임1] 2023년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사업설명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3. 1 ~ 12월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우수단체 인센티브 지급

· 지급기준 : 전기(필수),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중 두 종류 이상의 에너지사용량을 6개월 단위 직전 2년 같은 기간 평균사용량과 비교하여 일정 비율 이상 절감시 지급

· 단체회원 : 10% 이상 절감시 50~1,000만 원 지급

· 친환경 행동 마일리지 시범 서비스 등

- 에코마일리지 가입 확대 및 에너지절약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 홍보물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

- 에코마일리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에코 승용차 통합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사업 지원

○ 총사업비 : 1,107,241천원